



## 제재조치 공지

# CME 22-1585-BC  
발효일: 2024년 2월 29일

문서번호: [CME 22-1585-BC](#)

회원여부/비회원: Chunyu Mao

CME 규정위반: 규정 575. 시장 교란 행위 금지 (일부)

모든 주문은 반드시 진실된 거래를 실행할 목적으로 입력해야 한다. 또한, 모든 실행 불가 메시지는 정당한 목적으로 선의에 의해 입력해야 한다.

**D.** 어떠한 사람도 질서 있는 거래 행위 또는 공정한 거래 실행을 교란하려는 의도로 또는 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는 개의치 않고 도외시하며 실행 가능 메세지(들) 또는 실행 불가 메세지(들)을 입력하거나 입력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규정 432. 일반 위반 (일부)

다음은 위반 행위이다.

**W.**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직원과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당사자

###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 2114-5 직원 및 대리인에 대한 감독 책임 (일부)

규정 432..W (“일반 위반”)에 의거하여, CME Group 거래소와 관련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가 직원과 대리인(*agent*)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위반입니다. 명확히하기 위하여, 대리인에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완전자동화된 그리고 반자동화된 모든 자동거래시스템 (“ATS”)이 포함됩니다.

조사결과: Chunyu Mao 가 아래 제재의 근거가 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제안한 합의안에 따라, 2024년 2월 27일, CME 영업행위위원회 위원단 (“위원회”)은 2020년 3월 8일에서 2022년 7월 17일 사이의 기간 동안 Mao 가 차후 날짜 및 시간에 체결되도록 주문을 입력하기 위하여 자동거래시스템 (Automated Trading System, “ATS”)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. 검토 기간 중 다수의 경우에, Mao 의 주문은 다양한 가격 수준에 공격적으로 거래하였고, 몇몇 CME 유로달러, 통화 및 측면 선물 시장에서 시장 교란적인 가격 변동 및 회귀를 초래하였다. 또한, 위원단은 Mao 가 본인의 주문 체결을 모니터링하는 데에



실패하고, ATS 가 주문을 입력하도록 하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전술한 내용의 결과로, 위원단은 Mao 가 CME 규정 575.D. 및 432.W.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

**제재내용:**

합의안에 의거하여, 위원단은 Mao 에게 \$20,000 의 벌금을 부과하였고, CME Group 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트레이딩플로어 및 CME Group 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지정 계약시장, 파생상품청산기관 또는 스왑체결시설에의 직간접적 접근을 30 영업일 간 중지하였다. 접근 중지는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며 부과된 벌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30 거래일 간 지속된다.